

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시행세칙」 개정 추진

- ✓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
 - ①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이하 ‘종투사’)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**유동성비율** 규제를 **전체 증권사**로 확대
 - ② 유동성비율(現유동자산÷유동부채) 산정시, **유동자산**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**할인율**을 적용하고, **유동부채**에 채무보증 등 **우발채무**를 포함하는 등 **위기상황**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**산정기준 정교화(‘新조정유동성비율’)**
- ✓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
 - ① 증권사의 **부동산 NCR** 위험값 강화 및 **총 투자한도** 신설 관련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시행세칙」 개정 중
 - ②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**종투사**의 경우, 일반 증권사와 **차별화된 자본규제***(現NCR) 도입 검토(연내 계획 마련 목표)

* (예)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(영업용순자본:위험액)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
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「금융투자업규정」과 「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」(이하 ‘시행세칙’) 개정을 추진한다.*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①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**유동성비율** 규제를 **전체 증권사**로 확대하고, ②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**유동성비율**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‘**新조정유동성비율**’을 도입하는 내용이다.

*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안은 '26.5.21.~'26.6.30 간 규정변경예고 실시
「시행세칙」 개정안은 5월 중 예고 예정

1.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

'22.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. 이에 한국증권금융, 산업은행 등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*이 긴급 운영되었음에도,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%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. 또한, 최근 종투사 IMA·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.

* 예 : 증권금융 유동성 지원, 산은 회사채·CP 매입 프로그램, PF-ABCP 매입 프로그램 등

첫째,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.

현행 유동성 규제체계는 종투사(10개사)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(종투사 제외 13개사)에 한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(유동자산÷유동부채)을 각각 100%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 반면,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유동성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*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.

* 유동성비율=유동자산÷유동부채 / (現)조정유동성비율=유동자산÷(유동부채+채무보증)

금번 제도개선 결과, 전체 49개 증권사*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일괄 적용한다. 이를 통해 중소형사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외국계 지점(12개사)은 중개, 자문 등 유동성리스크가 제한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제외

둘째,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'新조정유동성비율'을 도입한다.

현행 유동성비율(유동자산÷유동부채)은 시장경색으로 투매(fire-sale)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,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.

* (참고) 은행업권은 위기상황시 현금유출을 가정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 운영
(유동성커버리지비율=고유동성자산÷30일간 순현금유출액)

이에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 변동위험*을 고려한 할인율(소위 '헤어컷')을 적용한다. 국공채, 특수채, 은행채, AAA등급 채권,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%, AA등급 채권은 7%, A등급 이하 채권은 10%, 주식, 외화증권, 개방형 펀드, ETF(실물형 국공채 ETF, 합성형 ETF 제외)는 15%, 합성형 ETF는 30%**의 할인율을 적용한다.

* 주식은 최근 10년간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의 월간 최대 하락률,
채권은 '22년 하반기 시장경색시 지수 하락률을 참고

** 합성형 ETF는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왑 계약을 통해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상 실물형 ETF에 비해 거래상대방 위험 등으로 위기시 현금화에 제약

또한, 분모인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.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1)차환발행증권과 2)대출·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하여 1)차환발행 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%(A1) 또는 60%(A2 이하)*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하여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가산하고, 2)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출·출자 약정 등은 잔액 전액을 1.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.(단, 현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제외)

* '22.4분기 중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: (A1) 16.1%, (A2이하) 60.4%

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해 전체 증권사에 적용함에 따라, 증권업권의 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이 제고되어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셋째,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.

그간 증권사 보유자산 중 집합투자증권(펀드)에 대해 40%는 '1개월', 30%는 '3개월', 30%는 '3개월 초과'로 유동화 기간이 상품별 실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배분되어 왔다. 향후에는 실질에 따라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,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.

한편, 현재 증권사가 환매조건부(이하 'RP') 매도 및 증권대차거래 등 증권 담보부 거래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일부 RP 매도 대상 채권 외*에는 유동자산에서 제외하고, 이를 통해 차입해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 등을 유동부채에 담보별 차등없이 반영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담보거래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, 우량 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낮았다.** 따라서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경색시 비우량 담보에 대한 담보교체 및 추가납입 요구로 증권사의 유동성 유출 우려가 있다.

- * RP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유채권에 대한 RP 매도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인정
- ** 담보제공 증권의 이자수익은 증권사에 귀속되므로 규제 부담이 동일하다면 고위험·고수익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채 등을 차입할 유인

이를 개선하여 담보제공 자산은 RP매도 대상 등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,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(100% 이내)을 곱하여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(유출률↑)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. ¹⁾RP매도 부채는 담보증권의 보유 또는 차입 여부,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채권 여부에 따라 담보별 유출률(0~100%)를 적용하고, ²⁾증권대차거래 활용 부채*는 담보자산 종류별 유출률을 가중평균한 회사별 유출률(15~100%)을 적용한다.

*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상환의무(=매도유가증권)

※ [참고] 유동부채 산정시 유출률 산식

- 1) RP매도에 따른 금전 상환의무 : 담보별 유출률(0~100%) 각각 적용
 - ① 보유자산 : (AA등급 이상 채권) 0%, (이외 자산) 50%
 - ② 차입자산 : (AA등급 이상 채권) 회사별 유출률(15~100%), (이외 자산) 100%
- 2)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에 대한 상환의무 : 대차 담보자산 전체 기준 ①~④를 가중평균하여 회사별 유출률(15~100%) 산출
 - ① 현금성자산,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실물형 국공채 ETF : 0%
 - ② 은행채, 회사채·CP(AA/A1 이상) : 15%
 - ③ 회사채·CP(A/A2 이하), 상장주식, ETF(실물형 국공채 ETF 제외) : 50%
 - ④ 비상장주식, 집합투자증권(ETF 제외), 기타자산 : 100%

II.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진행사항

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지속 추진 중이다. 먼저,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①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시행세칙」 개정을 '25.12.24일 규정변경예고 이후 진행 중에 있다. 이와 함께, ②시스템적 중요성과 업무범위가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*(現NCR)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(연내 계획 마련 목표)

* (예)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(영업용순자본:위험액)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

III. 향후 계획

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시행세칙」은 규정변경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'27.1.1일부터 시행한다.

<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>

- 예고기간 : 2026.5.21.(목) ~ 2026.6.30.(화) (40일)
-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
- 전자우편 : ncw1122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648

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> 정책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| 책임자 | 과 장 | 고영호 | (02-2100-26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남창우 | (02-2100-2652) |
| |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| 책임자 | 국 장 | 박시문 | (02-3145-758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김용진 | (02-3145-7602) |

